

2020. 12월 반상회 홍보자료

연번	제 목	담당부서
1	찾아가는 「법률홈닥터」 사업 안내	기획조정실
2	‘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’ 진실규명 신청·접수 안내	행정지원과



1 찾아가는 「법률홈닥터」 사업 안내

◇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는 「법률홈닥터」 사업을 운영하여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■ 사업개요

- 목 적 : 사회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법률서비스(소송수행 제외)제공
- 기 간 : 2018. 5. 8 ~ 2021. 12. 31.
 - ▷ 2018. 5. 8. 개시(1년 단위 법무부 재신청 후 연장), 매일 09시~18시, 상시 근무
 - ※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관련 전일 재택근무 중
- 장 소 : 해운대 문화복합센터 1층 법률홈닥터사무실
- 대 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
- 운영인력 :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용 변호사 1명
- 내 용 : 법률상담,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

■ 운영방법

- 구 상담실 운영 : 반드시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 진행
- 기관방문 상담 : 사례관리 시 법률자문 지원 등
-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상담
- 요청 기관이 있을 시 정기적인 출장상담 진행

■ 주요업무

- 법률 상담 : 민사, 가사 등 법률 관련 상담
- 법률 자문 : 사례회의 등에 참여 후 법률자문 등 문제 해결 방안 제시
- 법률 교육 : 사회복지시설 사용자 및 직원 등 대상

■ 문 의 : 법률홈닥터사무실 ☎ 749-5689

자료제공 : 기획조정실 ☎ 051-749-4334

2 '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' 진실규명 신청·접수 안내

◇ 항일독립운동,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·학살·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.

■ **신청기간** : '20. 12. 10. ~ '22. 12. 9. (2년, 공휴일 제외)

■ 신청자격

- 희생자,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
*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, 배우자를 말함
-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를 말함
* 전해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

■ 접수방법

- 원칙적 문서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
-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'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' 또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신청
☞ 주소지 상관없음,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· 위원회 주소 : 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~6층
· 민원상담 : 02-3393-9700 ~ 9702

■ 신청서류

- ① 진실규명신청서
-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③ 신청인 신분증(사본)
- ④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※기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, 대리인 위임장 등
- ⑤ 증빙자료

* 신청 서식은 위원회(www.ginsil.go.kr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

자료제공 :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☎ 051-749-4116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.

접수기간 2020. 12. 10 ~ 2022. 12. 9.(공휴일 제외)

접수방법 | 우편·방문접수 |

- 각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 또는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신청서류 • 진실규명신청서 1부
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
-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

※ 신청 서식은 위원회(www.jinsil.go.kr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진실규명 범위

-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
-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
-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·상해·실종사건
-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한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
-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·인권유린과 폭력·학살·의문사

 **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**
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, Republic of Korea
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 빌딩(5~6층)